

취재요청서

수신	언론사 사회부
발신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촉구하는 노동자 건강권 단체 - 건강한 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나다순)
제목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 노동자 건강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송신 날짜	2025년 11월 24일(월)
기자회견 일시	11월 25일 (화) 오후 1시, 국회 앞
문의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10-6642-2123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취임 이후 연이어 산재사망 근절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던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 요구권을 확대하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 사업장 출입권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작업중지권,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시간에 관한 내용은 부재합니다. 전-산업에 공고한 다단계 하도급 및 위험의 외주화, 불안정 노동 구조 역시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일터에서의 노동재해(산업재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다른 한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상당수의 과제는 법제도의 변화에 기대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기반 없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제도 변화 자체가 갖는 불안정성과 정치적 저항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위기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칠 경우 “양보”라는 이름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이 위험 작업 작업중지,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노동자 건강권 단체들은 그동안 일터에서의 노동재해는 이윤을 위한 과도한 노동강도와 위험한 작업환경의 결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일터를 통제하는 것이, 노동재해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핵심이라는 점 역시 강조해 왔습니다.

5. 이러한 맥락으로, 노동자 건강권 단체들은 국회 앞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농성에 들어간 민주노총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싸움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더하여 법 개정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안전보건의 주체로서 현장 노동자의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6.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 노동자 건강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은 11월 25일 화요일 13시, 국회 앞에서 진행합니다.** 공동주최단위는 “건강한 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나다순)입니다. 기자회견 개요와 기자회견문 첨부합니다. (단체별 발언문은 사후 보도자료 통해 배포) 기자회견, 이후 산안법 개정 상황에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노동자 건강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5년 11월 25일(화) 13시, 국회 앞

- 사회 : 김희지 활동가 (노동건강연대)

- 발언

발언1. 지역에서 본 명산감 역할 확대의 필요성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활동가)

발언 2. 반도체 사업장 노동자들과 작업중지권 (권영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발언 3. 서비스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발언 4. 기후위기와 작업중지권 등, 현장에서의 노동자 권리 확장의 필요성 (임용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산재사망 근절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던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사망 사고율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 금액 대폭 확대 및 중소사업장의 위험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AI기술 확산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강화, 이륜차 교통위반 집중단속 및 단속시설 확충 △도급계약 시 원청의 의무 강화 △노동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 요구권 확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등의 제재 강화 등을 말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노동자를 산재예방의 당사자이자 주체로 호명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 사업장 출입권한은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많은 노동조합이 타임오프 제도로 인해 노동안전보건과 같은 일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 구조는 노동자 개인이 작업중지를 쉽게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며, 노동조합의 집단적 작업중지 역시 요원하다. 대책은 또한 차별적 고용 구조, 속도와 생산 압박 등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요소를 개선하기보다는 노동자의 개별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와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처럼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전 사회에 만연히 자리 잡고 있지만, 이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한편, 대책에서 제시된 상당수의 과제는 법제도의 변화에 기대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는 제도적 기반 없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제도 변화 자체가 갖는 불안정성과 정치적 저항 가능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위기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칠 경우 “양보”라는 이름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의 종류, 규모, 금액 등에 따라 일부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의 의무에만 기대어 권리를 행사하다보니 노동자 대표가 없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대상이 아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권리를 실현할 수단이 없고, 이는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박탈로 이어진다. 같은 논리로 국적, 신분, 고용형태에 따른 수많은 차별들도 이들의 안전한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요구 차원에 머무를 수 없다는 점을, 조항 신설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안전한 일터는 현장 노동자의 주체성과 역량이 강화된 조건 속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일상활동을 복원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행동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터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타임오프(Time-off) 제도의 폐지를 통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이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타 사업장에 대한 출입권한을 제한없이 보장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감시와 개선 활동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가 필요하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터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말할 수 있으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위험 상황에서 필요시 누구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더하여, 오늘날 산업현장의 변화는 사고 예방을 넘어서는 복합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 극심한 성과 압박, 일터 괴롭힘과 과로로 인해 심화되는 정신 건강 문제, 새로운 직업병,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제조업/남성/정규직 위주의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이주/여성/성소수자 노동자들과 이들이 겪고 있는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생산량 압박이 야기하는 노동 재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이 위험 작업 작업중지,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지 이틀째다. 우리 노동자 건강권 단체는 민주노총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싸움에 함께한다. 더하여 현장 안전보건의 주체로서 현장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싸움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1월 25일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촉구하는

노동자 건강권 단체 일동

(건강한 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언1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 양은정

회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번화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새로운 영업장이 들어오려는 지, 한참 공사 중이었습니다. 노동자 2명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창문에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경사가 있었지만, 아웃트리거는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번화가라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공간인데도 출입통제나 유도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추락 및 낙하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전난간이 없으니 안전대를 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법 위반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용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전화에 반복해서 전화를 거는 것 외에는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참여를 위하여 사업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산업재해 예방 단체 등 소속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과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사실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도 없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터의 안전보건 문제에 있어 노동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박탈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어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10가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활동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작업중지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더욱 어렵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개선 건의하는 역할 말고는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분기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내외 가릴 것 없이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니 협의회를 참석할 수도 없고,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법령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구조와 과정을 통해 의견이 반영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일상 속에서 마주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업중지권도 지역 사업장에 대한 출입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절대다수는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자 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장, 영세한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지역 전체의 산재예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노동자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명예도, 안전도, 감독에 대한 권한도 아무것도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첫걸음은 그 위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의 참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 안전보건 문제에 있어 노동자의 활동시간을 보장하는 것, 지역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험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과 낙인 걱정 없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발언2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권영은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들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에 당한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작업중지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매번 하게 됩니다.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배관을 교체하던 협력사 노동자가 불산누출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원청이 산재예방의 책임이 있지만, 제때 신고도, 사고 현장의 노동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26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했고,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역시 늦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에겐 작업중지권이 없었습니다.

2021년 1월 LG 에서 수산화테트라 메틸암모늄(TMAH) 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돼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의 배경에 원청인 LG디스플레이의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출된 독성 물질을 하청업체 직원들이 손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 10여분 지속됐음에도 LG디스플레이 측은 안전조치나 사고 후 응급조치 모두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는 사고 누출액이 위험한 물질인지 몰랐다면, 알고 있던 원청 담당자들이 작업을 중지했어야 하는데, 즉시 대피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일터의 위험을 알 권리도, 위험 시 필요시 작업을 중지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15년을 일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우하경 님은 2024년 5월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일하는 것이 두렵다 했습니다. 기업은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다 합니다. 라인에서 원인모를 냄새가 작업장에 흘러들어와도 작업자들은 작업중지권을 가져본적이 없어 안전 책임자가 올때까지 작업을 멈출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터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말할 수 있으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위험 상황에서 필요시 누구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중지권 쟁취를 위해 반올림도 함께하겠습니다.

발언3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현철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근본 책무”라고 밝히며, 산재율 감축과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율을 낮추는 것에 직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노동자가 산재를 입지 않으려면, 일하다 치명적인 부상이나 목숨을 잃는 정도의 중대재해 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일하는 중 위험한 상황에서 바로 대피하고 위험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중지권 보장 조항이 있으나, 이에 배제되어 있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무제공자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2016년 515만2천명에서 2020년 704만4천명으로 189만2천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비스연맹만해도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플랫폼배달기사, 가전제품 방문점검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수많은 특고플랫폼노동자가 있습니다. 산업과 고용형태가 급변하면서 이처럼 특고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는 더더욱 너무 더디게 바뀝니다. 산안법 175개 조항,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674개 조항 중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위험작업이, 위험한 상황이 고용형태를 가려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산재를 입을 수도 있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피하고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작업중지 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처우가 없도록 해야 하고, 날씨요인과 같이 미리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회사가 고용형태를 가리 않고 모든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고객에게도 양해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인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해서는 작업중지 시 임금보전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법제안에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가전제품 방문점검 노동자가 고객집에 방문해서 얻어맞고, 개한테 물리고, 성폭력 당하는 상황에서 고객평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하지 않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택배 배송이나 배달일을 하는 서비스노동자도 안전과 임금 사이에 고민하지 않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위험작업에서 대피하고 거부할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산재1위 공화국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연맹 10만 조합원은 투쟁에 앞장 설 것입니다. 투쟁!

발언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임용현

지난여름 우리는 ‘역대급 폭염’을 또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매년 갱신되는 고온 현상이 이제는 그리 놀랍지도 않은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람 잡는’ 날씨에 세계 전역에서 온열질환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여름에는 한낮 최고기온이 40도까지 치솟는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전국을 덮쳤고, 온열질환자 수는 4460명, 이 가운데 29명이 사망했다는 질병관리청의 발표도 얼마 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폭염 말고도 홍수, 가뭄, 산불 등으로 인한 건강과 주거 위기, 나아가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도 전례 없는 규모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재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점점 더 파괴적인 양상으로 반복,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여름에도 우리는 건설현장, 농축산업을 비롯한 야외작업 현장에서, 택배와 물류센터에서, 학교급식실 등지에서 불별더위에 쓰러지는 노동자들의 소식을 어김없이 접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사대 작업중지권 보장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해가 갈수록 더욱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하게 다가오는 기후재난이라는 위험에 가장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노동자 작업중지권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폭염, 폭우, 한파, 산불, 대기오염, 감염병 등 다양한 기후재난 위험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려면 노동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위험작업의 중지 또는 거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터의 위험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노동자가 그 위험을 제대로 식별하고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한편, 오늘날 일터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단지 기후재난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업무 거절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처럼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권리 역시 작업중지권의 이름으로 마땅히 보장돼야 합니다. 나아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를 둘러싼 위험이 다변화하는 만큼, 이 변화가 권리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업중지권 역시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다수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은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위험을 거부할 권리보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지켜야 할 그 무엇이 현장에 굳건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기업들은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입해야 할 노동력을 ‘휴면 상태’로 잠시도 놓아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업주에게 작업중지권의 행사란, 단지 정상조업의 중단과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의미할 뿐입니다.

기후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불이익에 따른 두려움이나 소득감소, 성과압박 등을 이유로 몸과 마음의 위험신호에 질끈 눈 감아버리곤 하는 일은 이제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어제부터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권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산재가 발생할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작업중지권의 본령이라면, 이 작업중지권이 법조문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아닌 국회의 책무일 겁니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모든 일터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노동안전보건단체들도 민주노총과 함께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